

전주지방법원 2022. 1. 19 선고 2021가단496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20. 12. 10.부터 가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23,5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곽경평

별지